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전액 회수 또는 거짓 등을 이유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·철회하는 경우 그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429호, 2024. 9. 10. 공포, 11. 11. 시행)됨에 따라, 지원액의 반납 기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공공주택 사업자가 「건축법」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을 위해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건축물현황도의 발급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지원액의 반납 등)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지원액의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그 지원액을 받은 사람(이하 “납부의무자”라 한다)에게 환수할 금액(이하 “환수금”이라 한다)을 결정하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.

② 법 제15조의2제6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”이란 제1항에 따라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한다.

③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: 20회

2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: 40회

3.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: 60회

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는 경우(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, 남은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.

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공공주택사업자는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대상건축물 전체의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.

별지 제7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	즉시	
신청인	성명			생년월일			
	주소(주민등록지 주소)						
	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						
최초 결정 내용	결정번호						
	결정내용						
	[] 전세사기피해자 [] 법 제2조제4호나목 [] 법 제2조제4호다목 전세사기피해주택 소재지(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동·층·호까지 명확히 기재)						
분할 납부 신청 내용	① 총 환수금액	② 일시납부 금액	③ 분할납부 신청금액	④ 분할납부 횟수	⑤ 월 납입일		
	원	원	원	회	일		

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공공주택사업자 귀하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	
1. 작성방법	
가. ① 총 환수금액란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, ② 일시납부 금액란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,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란에는 분할납부 희망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	
• ① 총 환수금액 = ② 일시납부 금액 +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	
나. ④ 분할납부 횟수란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할 횟수를 적습니다.	
• 총 환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: 20회 이내,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: 40회 이내 2천만원 이상인 경우: 60회 이내	
2. 유의사항: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(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는 「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, 남은 환수금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.	

처리절차						
신청서 작성	➔	접수	➔	분할납부 승인	➔	통지
신청인		공공주택사업자		공공주택사업자		신청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3(지원액의 반납 등) ①</u> <u>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5조의</u> <u>2제5항에 따른 지원액의 반납</u> <u>사유가 발생하면 그 지원액을</u> <u>받은 사람(이하 “납부의무자”라</u> <u>한다)에게 환수할 금액(이하</u> <u>“환수금”이라 한다)을 결정하여</u> <u>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</u> <u>다.</u> <u>② 법 제15조의2제6항에서 “국</u> <u>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하여진 기</u> <u>간”이란 제1항에 따라 환수금</u> <u>반납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</u> <u>90일로 한다.</u> <u>③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의 전부</u> <u>또는 일부를 분할납부하려는 경</u> <u>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</u> <u>까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환수</u> <u>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공주택</u> <u>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</u> <u>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환수금</u> <u>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</u> <u>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</u> <u>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</u>

제11조(「건축법」에 관한 특례
신청 등) ① ~ ⑤ (생략)

<신설>

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
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
미만인 경우: 20회

2.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
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: 40
회

3.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
이상인 경우: 60회

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납부의무
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
회 이상 내지 않는 경우(일부를
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)에
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,
납은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
수 있다.

제11조(「건축법」에 관한 특례
신청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
음)

⑥ 공공주택사업자는 「건축물
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
규칙」 제11조제3항에도 불구
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
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
는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
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

	<u>구청장에게 대상건축물 전체의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.</u>
--	--